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 내용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전입세대확인서 교부	
개인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도) (시·군·구)			연락처	
법인·단체 신청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소재지				
	방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열람 또는 교부 대상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의 성명과 전입일자 표시 여부				표시됨 ☐ / 표시되지 않음 ☐	
용도 및 목적					
「주민등록법」 제 29 조의 2 제 1 항, 같은 법 시행령 제 49 조의 2 제 1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 조제 2 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 위임장은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위임장					
「주민등록법」 제 29 조의 2 제 2 항제 2 호에 따라 위 신청인에게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자 (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위임한 자 (법인·단체)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소재지				

제출 서류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서류 앞의 []에 √ 표를 합니다. [] 1. 신청인이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임을 입증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서류 [] 2. 신청인의 수급자 정보, 독립유공자 정보, 국가유공자 정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정보, 참전군인 정보, 5·18 민주유공자 정보, 특수임무 수행자 정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담당 공무원이 본인정보 제공 요구 및 공동이용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서류 앞의 []에 √ 표를 합니다. [] 3.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수수료 - 열람: 1건 1회 300원 - 교부: 1통 400원 ※ 「주민등록법」 제 29조의 2 제 2항 제 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원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의 3 및 제 7조의 4에 따라 공동이용을 위한 본인정보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법원행정처장 귀하
본인정보 공동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1.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의 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해 민원처리 기관의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 36조제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의 6 제 2항 후단에 따른 전산처리정보조직의 이용을 포함합니다)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의 사항
1. ‘서명 또는 인’란에는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지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서명을 할 때에는 자필로 한글 성명을 써야 합니다. 2.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한 외국인 등 「출입국관리법」 제 33조제 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 7조제 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는 외국인등록 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로 같을 수 있습니다. 3. 법인·단체 신청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란에 대표자가 서명하거나 법인 인감(사용 인감을 포함합니다)을 찍습니다. 4.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대해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 15호서식과 별지 제 16호서식에 따라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별지 제 15호서식과 별지 제 16호서식 사이에는 신청인의 확인(간인)이 있어야 합니다. 5.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의 위임은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임대차계약자 또는 매매계약자 본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받아 신청하는 자는 위임장과 본인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명서(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를 말합니다)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6.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 또는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7. 확인하려는 전입세대의 주소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전입세대확인서를 통해 해당 전입세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8.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는 세대주 또는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이 될 수 없으므로,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세대주 및 동거인 여부는 전입세대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습니다. 9.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 18조제 1항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 수수료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주민등록법」 제 29조의 2 제 2항제 3호마목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조제 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다.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관계 법령에서 주민등록자료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됩니다)이 신청하는 경우 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합니다)이 신청하는 경우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합니다)이 신청하는 경우 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합니다)이 신청하는 경우 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 또는 제 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타. 미성년자인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족의 경우에는 손자녀를 말합니다)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